

전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8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김현승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0.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525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 체결된 각 매매예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0. 5. 12. 접수 제13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9. 8. 접수 제33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보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보를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와 판결 정보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가 2021. 12. 28. 제1심판결 정보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22. 1.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9. 1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3억 원을 변제기 2019. 3.

30.까지, 자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회사 및 C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9. 10.경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잔여 원금 14억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3) C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20. 5. 1.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0. 5. 12. 접수 제1329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또한 2020. 9. 1.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9. 8. 접수 제3396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각 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2. 17. 25,607,292원만을 배당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C에게 14억 원 이상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제1심 법원의 김제시장, 서산시장, 천안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하여 1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고,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게 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C에게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C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